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4급, 7급 상당) 채용시험 공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4급, 7급 상당)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직위 개요

□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2개 직위, 2명)

직위 및 근무예정부서	직급	선발예정 인원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장	별정 4급 상당	1명
안전사회국 재난안전과	별정 7급 상당	1명

□ 관련법령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관련 법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2.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5. 9. 10.)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인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급별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기준

○ 채용예정직위 세부 응시자격요건 :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붙임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관련 적용)

상당계급		채 용 자 격
4급 상당	경 력	①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 위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상당	경 력	①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 위	①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공통>

- ①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
 - ※ 희망하는 직위와 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
- ② 경력기간,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 ①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명시)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요건의 경우 경력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경력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② **임용자격기준 중 학위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격증)요건으로 별정 4급(과장급)에 응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과 부서단위 책임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 i)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 ii)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학위의 범위>

- ①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분야)'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관련전공(분야) 학위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관련전공(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 '학위' 취득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자격증 범위>

- ①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②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③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④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요건의 경력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3. 채용 조건

- **근 무 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서울특별시 중구)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일* 까지
 - * 위원회 활동기간 : 조사개시일(25.6.17.)로 부터 1년간(26.6.16.까지), 3개월 연장 가능(「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다만, 임용기간 중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60세) 도달 시 당연퇴직 됨
- **임용예정일** : '25. 9월 중 임용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수당 지급
 - (4급 상당)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 (7급 상당) 임용직급별 보수기준에 따라 초임호봉* 결정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직위별 자격요건 적합여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은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붙임3) 참고
 - 2차 면접시험
 - **평정요소별로 3단계(상, 중, 하)로 평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평가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전문지식

□ **시험일정 및 장소**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5. 7. 24.(목)~ '25. 8. 5.(화)	'25. 7. 31.(목) ~ 8. 5.(화)	'25. 8. 25. 예정	'25. 9. 10.(수) 예정	'25. 9월 중순

- 시험장소 :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내 회의실
-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등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등에 게시됩니다.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미리 공지 예정입니다.(나라일터 확인)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또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5. 7. 31.(목) ~ 8. 5.(화)
-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채용담당자 앞
 - 전화번호 : ☎ 02-2650-1066, 1069, 1064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25. 8. 5. 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 서류는 스태플러 사용금지(클리프 또는 집게 이용)

6. 제출 서류

□ 공통서류(필수제출)

- ①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공무원의 경우에는 'e-사람' 상의 약력카드 추가 제출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담당업무의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4급은 A4 용지 3매 이내(요약매 별도), 7급은 요약없이 A4 2매 이내로 작성
-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⑥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⑧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⑩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⑪ 학위요건 - (석사·박사) 학위논문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 석사·박사 취득학교명은 전형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⑫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7. 기타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홈텍스(hometax)의 민원증명을 통해 조회 가능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응시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추후 별도로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합격자발표 후 한달간(25.10.1.~25.10.31. 예정)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직급 및 직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02-2650-1066, 1069, 1064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성 명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응시자격요건(택1) ※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학위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홍길동	예)별정직 4급상당 (조사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제출서류(총괄표)

- 제출유무란 해당부문에 “○” 표시하여 번호순으로 제출

※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금지(클립 또는 집게 이용)

구분	번호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필 수 제 출	1	[별지 제1호]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포함)	
	2	[별지 제2호] 이력서 1부	
	3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4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별지 제5호]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수)	
	6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7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8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학사, □석사, □박사)	
해 당 자 제 출	9	[별지 제7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11	[별지 제8호] (석사·박사) 학위논문 관련	
	12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자격증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날인 또는 서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 시 원 서			
응시 직급 및 응시 코드		예) 별정직 4급상당 (조사4)	
응시자격		(예)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민간경력)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 직급 및 응시 코드		예) 별정직 4급상당 (조사4)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수입인지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원서 상단의 (날인 또는 서명)란에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
- ② 응시자격요건 : 공고문 직무기술서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작성
 - ※ 여러 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요건 미기재, 중복기재의 경우와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
- ④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이메일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정부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4급 10,000원, 7급 7,000원)를 응시원서 뒤에 첨부 (구매처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를 통해 발급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등)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 모든 기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하며, 날인 및 서명은 반드시 도장 또는 수기로 작성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랑랑자 기재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 기재	성 명	

나.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〇〇기업(〇〇팀)	20xx. xx. xx. ~ 20xx. xx. xx. (0년 0개월 0일)	부장	
	〇〇기업(〇〇팀)	20xx. xx. xx. ~ 20xx. xx. xx. (0년 0개월 0일)	과장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〇〇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자 격 증	종류	등록번호	취득(예정)일	
	변호사	000000		

※ 경력은 최신 경력부터 위에서 아래로 작성함

※ 공고문의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되는 학력사항을 기재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 응시하고자하는 직위의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작성
- **응시자격요건** : ①경력, ②학위, ③자격증 중 본인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부분 필수적 작성

- ① **경력** :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을 최근 경력부터 차례대로 기재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이 포함된 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 경력만으로 지원하는 경우 관리자 경력 증빙을 위한 회사 조직도 등을 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② **학위**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만 기재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학위”가 포함된 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
 - 학위 경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 학위요건에 추가되는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학위와 경력사항을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함께 작성
- ③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예) 별정직 4급상당
-----	--	------	-------------

* 작성하실 때 본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3매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최근 실적부터 기술 (글자크기는 13포인트, 휴먼명조)
- ※ 지원배경, 관련분야 수행경험 등은 필수 기재
- ※ 필요 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민간인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서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급	예) 별정직 4급상당
-----	--	------	-------------

* 작성하실 때 본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가급적 4급은 A4 3매 이내(1매 요약별도)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7급 요약없이 A4 2매 이내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직무분야 구분표>

근무예정부서	직무분야	직급	인원	응시코드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	조사1과장	별정4급	1명	조사4
안전사회국 (재난안전과)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정책 점검 및 제도개선 실무지원	별정7급	1명	안전7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응시코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조사4	조사1과장	별정직 4급 상당	1명

근무예정부서
진상규명조사국 / 조사1과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1과 업무 총괄 · 이태원참사 구조 작업, 정부 및 언론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 이태원 참사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 정보 수집 관련 사항 · 구조 지휘라인의 체계적 구조지휘, 초기 장비·인력 투입 적정성 조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조정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논리적사고력, 전략적 사고력, 전문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및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지식 · 정책 기획 수립, 종합조정, 평가 등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지식 · 이태원참사 당시 구조 작업지시, 정부 및 언론대응 관련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style="margin-top: 5px;">※ 관련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경력) 행정, 조사·수사, 감사, 인권, 노동, 언론 - (학위관련) 법학, 법의학, 정치학, 인문·사회(과학)학, 행정학, 경영학, 수사학, 언론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응시코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안전7	이태원참사관련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실무지원	별정직 7급 상당	1명

근무예정부서
안전사회국 /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회 종합대책 수립 관련 국회·정부의 입법·정책 현황 파악 · 안전사회국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 안전사회국 각종 회의관리, 민원업무 처리, 기록물 관련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조정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및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지식 · 재난·안전 등 안전 관련 전문지식 · 제도 개선 실무 지원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분야 실무경력 : 행정, 법무, 조사·수사, 환경보건, 재난·안전</p>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경력) 행정, 조사·수사, 법무, 언론, 환경보건, 재난·안전 - (학위관련) 법학, 법의학, 정치학, 인문·사회(과학)학, 행정학, 경영학, 언론학, 방재안전학·재난관리학·위기관리학·안전공학 등 재난·안전 관련학과, 화학·독성학·환경보건학·환경공학·산업보건학 등 환경보건 관련학과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